

[주주 여러분께]

## 제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서

주주님의 건승과 평안을 기원합니다.

당사는 아래 안건의 승인을 받고자 아래와 같이 주주총회를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1. 일 시 : 2019년 3월 26일(화) 오전 10시

2. 장 소 :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545, 405호406호(상대원동, 한라시그마밸리)  
(주)파나시 본점 회의실

### 3. 목적사항

가. 보고사항

- 1) 감사보고
- 2) 영업보고
- 3) 외부감사인 선임 보고

나. 부의안건

제1호 의안 : 제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

제2호 의안 : 정관 일부 변경의 건

제3호 의안 :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

제4호 의안 : 감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

### 4.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

- 직접행사 : 주총참석장, 신분증

- 간접행사 :

\*개인주주 : 주총참석장, 위임장-서명(신분증 사본 첨부), 대리인의 신분증

\*법인주주 : 주총참석장, 위임장-인감날인(인감증명서 첨부), 대리인의 신분증

2019년 03월 11일

주식회사 파나시  
대표이사 최 종 운 (직인생략)

[첨부 1] 제2호 의안: 정관 일부 변경의 件

변경전 내용	변경후 내용	변경의 목적
<p>제2조 (목적)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1.(생략) 2. 의료기기 임대업 3. 의약품 도소매업 4. 의약부외품 도소매업 5. 생물학적 제제 도소매업 6. 식품 및 건강식품 도소매업 7. 기술, 개발 연구용역 8. 부동산 임대업 9. 화장품, 미용제품 도소매업 10. 위 각호에 부대되는 수출입업 및 수출입알선업 11.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일체</p>	<p>제2조 (목적)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1.(현행과 같음) <u>2. 삭제</u> <u>2. 의약품 도소매업</u> <u>3. 의약부외품 도소매업</u> <u>4. 생물학적 제제 도소매업</u> <u>5. 식품 및 건강식품 도소매업</u> <u>6. 기술, 개발 연구용역</u> <u>7. 부동산 임대업</u> <u>8. 화장품, 미용제품 도소매업</u> <u>9. 미용기기의 제조 및 판매업</u> <u>10. 의료기기 및 미용기기의 중개 알선업</u> <u>11. 정밀광학용 기기 및 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</u> <u>12. 전기,전자기기의 제조 및 판매</u> <u>13. 의료기기, 미용기기 렌탈</u> <u>14.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</u> 15. 위 각호에 부대되는 수출입업 및 수출입알선업 16.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일체</p>	<p>사업다 각화에 따른 사업목 적 추 가</p>

<p>제16조 (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)</p> <p>①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을 정지한다.</p> <p>②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.</p> <p>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, 이사회 결의로 3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. 이 경우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. 이 경우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</p>	<p>제16조 (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, 이사회 결의로 3개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. 이 경우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. 이 경우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</p>	<p>자구 수정</p>
<p>제22조(소집시기)</p> <p>①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.</p> <p>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,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.</p>	<p>제22조(소집시기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, 임시 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.</p>	<p>자구 수정</p>
<p>제35조(이사의 선임)</p> <p>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.</p> <p>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</p> <p>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	<p>제35조(이사의 선임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들을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로 구분하여 결정할 수 있다.</p>	<p>기타비 상무이 사 관 련 내 용 추 가</p>

<p>제39조(이사의 보수와 퇴직금)</p> <p>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.</p> <p>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.</p>	<p>제39조(이사의 보수와 퇴직금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본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그 한도를 정하며, 각 이사에게 지급될 구체적인 보수는 위 한도 범위 안에서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.</p>	<p>이사의 보수 관련 항목 추가</p>
<p>제54조(외부감사인의 선임)</p> <p>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,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</p>	<p>제54조(외부감사인의 선임)</p> <p>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,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.</p>	<p>자구수정</p>
<p>부 칙</p> <p>이 정관은 2017년 03월 22일부터 시행한다.</p> <p>제7조(1주의 금액)는 구주권제출공고 만료 익일부터 시행한다.</p>	<p>부 칙</p> <p>이 정관은 2019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.</p>	<p>시행일 변경, 경과문구 삭제</p>

**[첨부 2] 제3호 의안: 이사보수 한도액 승인의 件**

구 분	전 기	당 기
이사의 수(사외이사수)	4(1)	4(1)
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	20 억 원	20 억 원

**[첨부 3] 제4호 의안: 감사보수 한도액 승인의 件**

구 분	전 기	당 기
감사의 수	1	1
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	5 억원	5 억 원